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I . 회부경위

1. 의안번호 : 제2278호
2. 발 의 자 : 문형주 의원
3. 발의일자 : 2017. 11. 15.
4. 회부일자 : 2017. 11. 21.

II .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 학생들의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그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 등 학교폭력으로 인한 사전적·사후적 조치를 통해 학생들의 올바른 성장을 돕고자 하는 것임.

III . 주요내용

1. 학교폭력예방 등에 대하여 정의함(안 제2조).
2.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교육감과 학교장의 책무를 부여함(안 제3조).
3. 학교폭력예방 등을 위해 매년 계획을 수립·시행함을 규정함(안 제4조).
4. 학교폭력 예방활동 및 연구 활동을 규정함(안 제5조 및 제6조).
5. 학교폭력해결을 위한 자문기구를 둠(안 제7조)

6.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 및 가해학생 조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8조 및 제9조).
7. 학교폭력예방 교육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규정함(안 제10조 및 제11조).
8. 학교폭력 피·가해학생간 갈등조정 및 관계개선을 위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2조).
9. 학교폭력 사전 예방 및 사후 조치를 위하여 협력기관을 구축함(안 제13조).
10. 불이익처분을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4조)
11.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5조).
12. 표창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6조)

IV. 참고사항

1. 관계법령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2. 예산조치 : 해당 없음(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도 붙임)
3.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V. 검토 의견(수석전문위원 김창범)

1.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

- 동 조례안은 2017년 11월 15일 문형주 의원에 의해 의안번호 제 2278호로 발의되어 2017년 11월 21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 동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소재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들의 학교폭력 예방 및 조정·해결에 대한 지원계획의 수립과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 그리고 실태조사 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이 학교폭력으로부터 벗어나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기여하고자 발의된 것입니다.

2. 주요 검토의견

가. 조례 제정의 배경과 취지에 대한 의견

- 오늘날 학교폭력은 언어폭력, 집단따돌림, 스토킹, 신체폭행 등 그 형태가 다양화되면서 학교부적응과 자살 등의 심각한 후유증을 발생시키는 등 커다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 이와 같은 학교폭력 해결 방안의 일환으로 2004년에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법’)이 제정되었고, 교육부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후 동 법률은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수차례 개정되었고, 교육부 역시 제3차(2015~2019)에 걸쳐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등 정부차원에서 학교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또한 서울시교육청에서도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매년 학교폭력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있고, 학생과 교직원 등을 상대로 학교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학교내 CCTV설치, 배움터지킴이 운영 등 학교폭력 예방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단위학교 상담지원과 학생상담센터의 운영 등을 통한 학생상담활동 사업 또한 시행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이와 같은 제도적·정책적 방안들이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현장에서는 학교폭력이 근절되지 않고 가해유형이 점차 심각해짐에 따라, 일률적인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이 아닌 지역실정에 맞는 예방 및 대책의 필요성과 함께 그에 따른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런 점에서 동 조례안은 교육감으로 하여금 학교폭력문제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연차 계획의 수립과 학교폭력 예방교육, 예방활동 및 연구의 실시, 그리고 피·가해학생 지원 등에 대한 그 실제적 방안을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재정립하고 보완하려는 것으로 제정 취지면에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표-1] 최근 3년간 서울시내 학교폭력 유형별 발생 현황

(2017.8.기준, 단위 : 건)

가해 유형	학년도	2014				2015				2016			
		초	중	고	계	초	중	고	계	초	중	고	계
상해		40	91	39	170	47	80	39	166	47	97	39	183
폭행		125	1,364	377	1,866	182	1,346	377	1,905	216	1,321	377	1,914
감금		1	3	0	4	3	1	0	4	2	6	0	8
협박		26	120	30	176	61	102	30	193	31	129	30	190
약취·유인		5	54	7	66	11	54	7	72	9	60	7	76
명예훼손·모욕		44	153	60	257	57	182	60	299	52	147	60	259
공갈(금품갈취)		9	73	9	91	8	52	9	69	3	70	9	82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11	48	11	70	9	36	11	56	7	41	11	59
따돌림		26	78	14	118	53	66	14	133	32	89	14	135

정보통신망상의 음란·폭력	32	163	49	244	64	169	49	282	58	210	49	317
기타(성추행, 성폭력 포함)	50	235	37	322	100	221	37	358	97	197	37	331
계	369	2,382	633	3,384	595	2,309	633	3,537	554	2,367	633	3,554

[표-2] 서울시교육청 학교폭력 예방 관련 사업 내역

사업명	사업내역
학교폭력예방지원	평화로운 학교 문화 조성
	학교 안전망 구축
	학교폭력 예방 대책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시범적용학교 운영
	청소년 경찰학교 운영
	학교폭력실태조사
	학교폭력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학교폭력 사안처리지원
	학교폭력 예방 교육지원 체계 구축
	어울림프로그램 운영
	학교폭력 예방 선도학교 운영
	언어·사이버 폭력 예방
	학교 CCTV교체
보호관찰대상 학생 멘토링제 도입	
학생상담활동지원	117학교폭력신고센터 운영
	단위학교 상담 지원
	학생상담센터 운영
	Wee센터별 정신과자문의 지정 운영
	학교폭력피해학생 맞춤형 교육지원
	학교폭력가해학생 맞춤형 교육지원
	Wee프로젝트 지원
화해분쟁조정지원	

나. 주요 조문별 검토

1) 조례안의 구성

- 동 조례안은 총 17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안의 목적, 정의, 교육감의 책무 등을 규정하고 있고,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학생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계획 수립

과 예방연구 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7조에서는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자문기구의 운영, 안 제8조부터 제10조에서는 피·가해학생에 대한 지원 및 예방교육에 관한 지원, 안 제11조는 학교폭력에 관한 실태조사, 안 제12조부터 제17조까지는 피·가해학생간 갈등조정과 불이익처분금지 및 예산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동 조례안의 전체적인 구성이나 조문 체계의 경우 상위법령에 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준수하고 있어 구성면에서 별도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2) 분쟁조정의 지원(안 제3조~ 안 제15조)

- 동 조례안은 피해자와 가해자 간의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을 교육감의 책무로 규정하는 한편(안 제3조제1항), 추진계획에 학교폭력 분쟁조정을 위한 인력 양성과 지원사업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키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안 제4조제2항제6호 및 제7호).

또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함으로써 분쟁조정 역량을 향상시키고(안 제10조제2항), 분쟁조정을 위한 예산 등을 지원(안 제15조제2항)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분쟁조정의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 특히 동 조례안이 분쟁조정의 기능 강화에 역점을 둔 이유는 동 조례안의 상위법인 학교폭력법이 점차 가해자 처벌 강화와 함께 절차법적 형태로 개정됨에 따라,

당초 학교폭력법이 추구하던 분쟁조정 방식이 교육적 관점이 아닌 폭력적 관점에서 가해자 처벌 중심으로 규정되어 가고 있다는 측면에서 조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함이라고 생각합니다.¹⁾

1) '학교폭력해결절차 현황 및 대안모색 토론회', (서울시의회 문형주시의원·학교폭력예방대책포럼·(사)갈등

- 더욱이 현행 법률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학교폭력과 관련한 분쟁사항을 교육적 관점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학교폭력법」 제18조2)) 분쟁을 조정하더라도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반드시 행하게 되어 있고(「학교폭력법」 제17조3)),

가해학생의 입장에서조차 학생부에 기재되기 때문에 자치위원회에 대한 분쟁 조정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며(「초·중등교육법」 제25조, 동법 시행규칙 제21조4)), 위원들 역시 전문성이 낮은 학부모위원이 과반수를 이루고 있어 분쟁조정 기능 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점에서 동 조례안이 가해자 처벌보다 분쟁조정이 우선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피·가해자 학생 모두를 선도할 수 있도록 교육감에게 분쟁조정을 위한 책무를 부여하며 이에 따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계획의 수립과 예방활동, 그리고 교육을 통한 자치위원들의 역량강화와 예산지원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한 것은

해결과 대화, 2017.9.26.), ‘회복적 과정이 가능한 학폭법 개정 토론회’(도종환 국회의원, 송기석 국회의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회 좋은교사 운동, 2016.7.13.),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상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에 관한 소고’, 윤은경(강원법학 제46권, 2015.10.), “아이들 간의 다툼, ‘폭력’ 아닌 ‘갈등’의 관점에서 출발해야”, 오마이뉴스(2017.7.13.) 등

- 2) 제18조(분쟁조정) ① 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분쟁을 조정할 수 있다.
- 3)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⑥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때에는 학교의 장은 14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한다.
- 4) 「초·중등교육법」제25조(학교생활기록) ① 학교의 장은 학생의 학업성취도와 인성(人性)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평가하여 학생지도 및 상급학교(「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학생 선발에 활용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1조(학교생활기록의 작성기준)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작성기준에 따라 학교생활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2. 학적사항: 학생의 입학 전 학교의 이름 및 졸업 연월일, 재학 중 학적 변동이 있는 경우 그 날짜 및 내용 등. 이 경우 학적 변동이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조치사항에 따른 것인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3. 출결사항: 학생의 학년별 출결상황 등. 이 경우 출결상황이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조치사항에 따른 것인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6.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학교교육 이수 중 학생의 행동특성과 학생의 학교교육 이수 상황을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의견 등. 이 경우 해당 학생에 대하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조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큰 의미가 있다 할 것입니다.

- 다만 동 조례안에서 규정한바와 같이 분쟁조정 기능이 강화되더라도, 결국 가해학생은 「학교폭력법」 제17조에 따른 조치를 받게 되고,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조치내용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될 수 밖에 없어, 가해자는 피해자와의 분쟁 조정에 임하기보다는 조치 사항에 대한 행정소송을 감행할 수 밖에 없는 한계가 존재합니다.
- 따라서 동 조례안이 규정하고 있는 학교폭력에 대한 분쟁조정 사항이 실질적으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현행 법률에 대한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는바, 서울시교육청은 이에 대한 법적 검토를 면밀히 거쳐 법률개정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 참고로 서울시교육청도 동 조례안에 대해 ‘의견 없음’을 의견으로 제출한 바 있어(학생생활교육과-22912, 2017.12.07) 조례 제정에 별도의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 2017.11.28.] [법률 제15044호, 2017.11.28.,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 1의2. "따돌림"이란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또는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 1의3. "사이버 따돌림"이란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학생들이 특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 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가하거나, 특정 학생과 관련된 개인정보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2.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와 같은 법 제 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
3. "가해학생"이란 가해자 중에서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한다.
4. "피해학생"이란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학생을 말한다.
5. "장애학생"이란 신체적·정신적·지적 장애 등으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서 규정하는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학생을 말한다.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조사·연구·교육·제도 등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인 학교폭력 예방활동과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교육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
-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이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11조(교육감의 임무) ① 교육감은 시·도교육청에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을 담당하는 전담부서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② 교육감은 관할 구역 안에서 학교폭력이 발생한 때에는 해당 학교의 장 및 관련 학교의 장에게 그 경과 및 결과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 ③ 교육감은 관할 구역 안의 학교폭력이 관할 구역 외의 학교폭력과 관련이 있는 때에는 그 관할 교육감과 협의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④ 교육감은 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실시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⑤ 교육감은 제12조에 따른 자치위원회가 처리한 학교의 학교폭력빈도를 학교의 장에 대한 업무수행 평가에 부정적 자료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⑥ 교육감은 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전학의 경우 그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제17조제1항제9호에 따른 퇴학처분의 경우 해당 학생의 건전한 성장을 위하여 다른 학교 재입학 등의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⑦ 교육감은 대책위원회 및 지역위원회에 관할 구역 안의 학교폭력의 실태 및 대책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고 공표하여야 한다. 관할 구역 밖의 학교폭력 관련 사항 중 관할 구역 안의 학교와 관련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⑧ 교육감은 학교폭력의 실태를 파악하고 학교폭력에 대한 효율적인 예방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연 2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 ⑨ 교육감은 학교폭력 등에 관한 조사, 상담, 치유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한 전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⑩ 교육감은 관할 구역에서 학교폭력이 발생한 때에 해당 학교의 장 또는 소속 교원이 그 경과 및 결과를 보고함에 있어 축소 및 은폐를 시도한 경우에는 「교육공무원법」 제50조 및 「사립학교법」 제62조에 따른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 ⑪ 교육감은 관할 구역에서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마련에 기여한 바가 큰 학교 또는 소속 교원에게 상훈을 수여하거나 소속 교원의 근무성적 평정에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
- ⑫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전담부서의 구성과 제8항에 따라 실시하는 학교폭력 실태조사 및 제9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의2(학교폭력 조사·상담 등) ① 교육감은 학교폭력 예방과 사후조치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사·상담 등을 수행할 수 있다.

1. 학교폭력 피해학생 상담 및 가해학생 조사
 2. 필요한 경우 가해학생 학부모 조사
 3.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계획의 이행 지도
 4. 관할 구역 학교폭력서클 단속
 5. 학교폭력 예방을 위하여 민간 기관 및 업소 출입·검사
 6. 그 밖에 학교폭력 등과 관련하여 필요로 하는 사항
- ② 교육감은 제1항의 조사·상담 등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③ 교육감 및 제2항에 따른 위탁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라 조사·상담 등을 하는 관계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 ⑤ 제1항제1호 및 제4호의 조사 등의 결과는 학교의 장 및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자치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자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체위원의 과반수를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된 학부모대표로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학부모전체회의에서 학부모대표를 선출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선출된 학부모대표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자치위원회는 분기별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고, 자치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자치위원회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2. 학교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3.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4.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받거나 보고받은 경우
 5. 가해학생이 협박 또는 보복한 사실을 신고받거나 보고받은 경우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③ 자치위원회는 회의의 일시, 장소, 출석위원, 토의내용 및 의결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 ④ 그 밖에 자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8조(분쟁조정) ① 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분쟁을 조정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분쟁의 조정기간은 1개월을 넘지 못한다.
- ③ 학교폭력과 관련한 분쟁조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피해학생과 가해학생간 또는 그 보호자 간의 손해배상에 관련된 합의조정
 2. 그 밖에 자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④ 자치위원회는 분쟁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기관의 협조를 얻어 학교폭력과 관련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 ⑤ 자치위원회가 분쟁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피해학생·가해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⑥ 시·도교육청 관할 구역 안의 소속 학교가 다른 학생 간에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해당 학교의 자치위원회위원장과 협의의를 거쳐 직접 분쟁을 조정한다. 이 경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⑦ 관할 구역을 달리하는 시·도교육청 소속 학교의 학생 간에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피해학생을 감독하는 교육감이 가해학생을 감독하는 교육감 및 관련 해당 학교의 자치위원회위원장과 협의의를 거쳐 직접 분쟁을 조정한다. 이 경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7.7.26.] [대통령령 제28211호, 2017.7.26., 타법개정]

- 제14조(자치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자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해당 학교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해당 학교의 교감
 2. 해당 학교의 교사 중 학생생활지도 경력이 있는 교사
 3.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선출된 학부모대표
 4. 판사·검사·변호사
 5. 해당 학교를 관할하는 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
 6. 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
 7. 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 및 청소년보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② 자치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자치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자치위원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④ 학교의 장은 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치위원회의 위원이 제3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 ⑤ 자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⑥ 자치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학교의 교직원에서 자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지명한다.
- ⑦ 자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⑧ 자치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 일시를 정할 때에는 일과 후, 주말 등 위원들이 참석하기 편리한 시간으로 정하여야 한다.